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6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여 구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사항 개정(안 제6조제4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로 개정

나. 수수료 감면에 따른 별표 정비(안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타목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4-50호, 2024.1.2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를 “민원문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제1호 중 타목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을 전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u>증명민원 중 주민 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부의</u> 수수료를 면제한다. <u><후단 신설></u>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민원문서의 발급</u> ----- ----- ----- <u>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u>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table><tr><th>종 목</th><th>단위</th><th>수수료액</th><th>비고</th></tr><tr><td>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td></td><td></td><td></td></tr><tr><td>(1) 성적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tr><td>(2) 졸업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tr><td>(3) 검정고시 성적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tr><td>(4) 검정고시 합격증명</td><td>1건</td><td>무료</td><td></td></tr></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성적증명	1건	무료		(2) 졸업증명	1건	무료		(3)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	무료		(4)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	무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table><tr><th>종 목</th><th>단위</th><th>수수료액</th><th>비고</th></tr><tr><td>〈삭제〉</td><td></td><td></td><td></td></tr></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삭제〉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성적증명	1건	무료																															
(2) 졸업증명	1건	무료																															
(3)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	무료																															
(4)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	무료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삭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금액의 일부개정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이경호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의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운영 지침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등)

- ①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마감한다.
 1.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를 지체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2.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송금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관할 등기소에서 출력한 외부 무인발급기의 일일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대조·확인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함께 마감처리한다.
- ②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된 발급수수료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정산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발급 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